

 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21. 12. 20.(월) 총 3매(본문 2, 참고 1)	
담당 부서	해양공간정책과	담당 자	• 과장 황준성, 사무관 임성규, 주무관 정다혜 - ☎ (044)200-5260, 5266, 5265	
보 도 일 시		2021년 12월 21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20.(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어려운 공유수면 제도, 함께 나누면 쉬워집니다

- 공유수면관리청과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협의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2월 21일(화)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전국의 195개 공유수면관리청과 함께 공유수면 관리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최근 법령 개정사항의 실행방안을 논의 한다.

* 공유수면이란 바다, 바닷가, 하천·호소·구거 및 그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공공의 자산임

공유수면의 이용 수요는 식물 재배부터 대형 시설물 설치까지 그 형태와 규모가 매우 다양하여 인·허가 과정에서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령 해석을 요하는 특성이 있다.

이에, 공유수면관리청마다 법령 적용을 달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제도가 미비하여 공유수면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수면 이용자에게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최근 증가하는 바닷가 야영행위에 따른 쓰레기 투기와 야간 소음으로 인한 이용객과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도 어려웠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일선 업무를 담당하는 공유수면관리청 업무 담당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점·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감면적용 방법, 감면비율 등을 논의하고, '22년 부과시에는 요건에 해당할 경우 차질 없이 점·사용료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감염병 확산 등 재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11월에 개정·공포된 바 있으며,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음은, 캠핑·차박 등의 이용행위에 대한 공유수면관리청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공유수면의 보전·관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번 협의회에서는 공유수면에 쪼라인 설치, 포락지*의 토지복원 절차 등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공유수면 제도 적용사례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 적법한 집행을 당부할 예정이다.

*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으나 침식작용 등으로 인하여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해양수산부 황준성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일선 현장을 책임지는 공유수면관리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효율적인 공유수면 제도 운영 방안 및 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해변 내 캠핑 및 취사



해양 쓰레기 수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협의회 개요

- (주최)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 (주요 참석자) 해양공간정책과 및 195개 공유수면관리청(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방해양수산청)
 - (일시/ 진행방법) '21. 12. 21(화), 09:30~17:30 / 비대면 영상의회의
- *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권역별 분할하여 3회 실시

차 시	시 간	참석 대상
1차	09:30~11:00	수도권·강원권 공유수면관리청 업무 담당
2차	13:30~15:00	충청권·경상권 공유수면관리청 업무 담당
3차	16:00~17:30	호남권·제주권 공유수면관리청 업무 담당

□ 주요 안건

순 번	안건 제목	안건 내용
안건 1	공유수면에서 캠핑·차박 등 야영행위에 대한 관리방안	○ (현황) 현재 캠핑·차박 등 야영행위 수요가 높아, 공유수면 내 무분별한 차박, 텐트 설치 등으로 공유수면 내 다량의 폐기물 및 인근 주민들의 민원 등이 발생하나 현행 공유수면법 상 야영 등 특정 행위에 대한 관리규정 부재 ○ (논의사항) 공유수면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보전·관리를 위해 공유수면 내 행위제한 또는 야영행위 금지구역 설정과 같은 관리 규정 신설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안건 2	감염병·재해발생 등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 적용방안	○ (현황) 공유수면법 상 감염병 등 특별한 사정 발생 시 점용·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는 개정 법률 공포 및 시행예정 ○ (논의사항) 합리적인 감면비율, 감면 적용 방안 등
기타사항		○ 공유수면 상부를 점용·사용하는 로프형 레저시설에 대한 정확한 규정 적용 방법 안내 ○ 공유수면법 상 포락지(공유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토지)를 토지로 복원하는 행위에 대한 제도안내 ○ 질의 및 응답